

성과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: 2020. 04. 03.

담당 : 평가감사실(950-4336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기능)	제3조(구성)	제4조(임기)
제5조(회의 소집과 의결)	제6조(추진의무 및 협조요구)	제7조(비밀유지)	제8조(회의록)
제9조(업무관장)	제10조(기타)		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직제 및 사무분장 제8조2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비전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활동의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·관리·평가하기 위해 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한다.

1.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성과 관리
2. 학과별 성과관리
3. 성과 개선 방향 도출 및 환류
4. 기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일립교육부장, 전공교육부장, 행정본부장, 기획실장, 평가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에 연구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평가감사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 소집과 의결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

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추진의무 및 협조요구) 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부서는 성실히 협조한다.

제7조(비밀유지) 대학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대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2/3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업무관장) 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는 평가감사실에서 관장한다.

제10조(기타)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에 따라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